

## 1. 개정이유

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,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(안 제6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 
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영 제9조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”이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<p>제6조의2(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)<br/> 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6조의2(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)</u><br/> <u>영 제9조제4호에서 “ 금융위원회가</u><br/> <u>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”</u><br/> <u>이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</u><br/> <u>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른 신용</u><br/> <u>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</u><br/> <u>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</u><br/> <u>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</u><br/> <u>채권을 말한다.</u></p> |